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신문이 한쪽 당사자의
권리포기를 촉구하는 것은 법정모욕죄**

Attorney-General v. Times Newspapers Ltd.

House of Lords (1974 년)

(사실개요)

1959 년부터 1961 년 사이에 디스틸러즈 주식회사(Distillers, co., Ltd.)는 탈리도마이드 수면제가 함유된 약을 인가받아 생산, 판매하였다. 임신중에 그 약을 복용한 바 있는 임신부들로부터 약 450 명의 기형아가 탄생하였다. 1968 년, 기형아들이 세 살이 되기 전에, 그 회사를 상대로 62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은 제약회사의 과실은 묻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회사가 변상을 한다는 것으로 화해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약과 관련된 또 다른 261 건의 소송이 허가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또 다시 123 건의 소송이 더 제기되었다. 1971 년에 제약회사의 제안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제안내용은 1968 년에 제기되었던 소송의 해결과는 별도로 모든 부모가 그 제안을 수락한다는 조건 하에, 제약회사는 약 300 만 파운드의 자선위탁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5 명의 부모는 거절하였다. 한편 부모들이 법정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겠다는 신청건은 1972 년 4 월 항소원에서 기각되었다. 그 후 또다시 협상은 채재되었다. 1972 년 9 월 24 일, 전국적인 일요신문인 타임즈 지는 기형아들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시리즈 물 중 첫 회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디스탈러즈 사는 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법정모욕이라고 법무장관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타임즈 지의 편집인은 그 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문제가 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관한 완전한 사실에 의한 정확한 보도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사에 대한 평가를 변호사와 회사를 상대로 요구하였다. 법무장관의 기소제의에 대해 고등법원 민사부(Divisional Court of the Queen's Bench Division)는 그 기사의 게재는 법정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사의 게재중지를 인정하였다. 1972 년 11 월 17 일, 게재중지 결정 후 타임사의 항소가 계류중일 때 11 월 29 일 의회에서는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토론의 내용은 게재금지 된 기사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 후 언론과 일반시민은 제약회사가 기형아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제약회사는 사실상 더 좋은 조건의 변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후 항소원이 기사게재중지결정을 취소하자, 법무장관은 상원에 상고하였다. 상고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다.

「계류중인 사건을 편향되게 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공중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는 법정 모욕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약회사의 과실로 책임지우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과실이 소송 이유종의 하나라는 이유에서도 법정모욕을 구성한다.」 레이드 판사(Lord Reid)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쪽 소송당사자에게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끔 하는 어떠한 사악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온건한 논평으로 한쪽

소송당사자에게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모리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문제 삼는 법적 원칙이 부당하지 않거나 불공정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유롭긴 하나 온건한 논평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약회사의 법적 책임과는 상관없이 그 회사가 판매한 약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관대한 보상을 해야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러한 논평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플록 판사(Lord Diplock)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계류중인 사건에서 현행법상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는 특정 당사자에게 사적인 설득을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해 공적인 비난을 하는 행위간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몬 판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특정 소송인에 대한 사적인 압력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재판과정에 대한 침해 행위이므로, 공정하고도 합리적이며 온건한 개인적인 논평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그러한 공통의 이익이 존재할 때와 같은 좁은 한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크로스(Cross) 판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소송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즉 기자가 사실을 공정하고 온건하게 표현했다면, 소송인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는 기사의 공표도 결국 법정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무장관은 그가 생각하기에 법정 모욕에 해당하는 사익과 공익차원에서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건을 제소할 권한이 있다.

(상고인 측 변론)

이번 사건은 금세기동안 상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법정모욕법의 주요한 분야와 관련된 것이다. 항소원은 왕실측 변호사로서의 법무장관의 역할과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혼동하였다. 법정모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명백히 공익간제가 개입된다. 법무장관은 자선사업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에도 역시 개입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그가 개입한 것은 법정을 대신해서 한 것이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논평이 특정 당사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재판이 방해받을 정도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 논평행위는 결국 법정모욕이 된다. 소송인에 가한 압력의 결과가 아무리 그 자체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이상의 것들을 관찰해야 하며, 원리원칙을 고려해야만 한다. 재판이 계류중인 시절에서 고의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법정모욕이 될 것이다. 호별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그 화재의 책임귀속에 대한 논쟁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자 중의한명이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제 3자가 호텔소유주는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평은 해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진행을 편향되게 할 만한 실질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느냐의 여부에 있다. 현 사건에 대해 항소원에서는, 영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않은 공익의 형평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은 지금까지 뿌리내려온 법에 역행하는 것이며, 모욕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소지가 있다. 상세하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재판진행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문기사에서 소송의 심리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특정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항변을 포기하게끔 충동질하였던 것이다. 친구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충고하는 경우와 그의 소송에 대해 비관을 가하는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누구든지 의회에서는, 의회 밖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보도할 수도 있다. 제약회사에 관한 의회에서의 토론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그 내용이 의회외부에서 기사화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의 신문기사는 제약회사의 과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게재된 것이며, 더욱이 그 회사의 도덕적 의무를 촉구하려고 까지 했던 것이다.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이는 법정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인 모두의 입장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피고측 변론)

1972 년의 상황을 보면 소송의 원고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토의된 문제는 모든 원고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 당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 사건은 법정이나 증인측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압력과 관계가 있다. 이런 류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례를 거의 볼 수 없다. 법무장관도 정당한 압력과 부당한 압력을 구분하면서, 우정어린 충고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당한 압력과 부당한 압력을 구분할 때, 누구든지 누가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또한 압력의 수단과 방법, 소송진행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사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공공관심사를 논의하고 논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형평을 유지해야 할 법정은 법무장관이 요구하는 침묵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신문이 항상 사적인 소송을 취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관심사를 논평하고 토의할 권리가 여타 공공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형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관심사였다. 현 사건에서의 공공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약을 판매한 회사가 져야 할 법적책 임의 정도, 예컨대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만 하는지의 여부. 둘째, 약을 판매한 자의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 셋째, 기형아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 넷째, 이러한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섯째, 이에 대한 어떤 연구도 실시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여섯째, 장차 이와 유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현 사건에서 소송들이 계류중이었다는 시간적 요인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된 약이 판금되어야만 한다는 공공의 관심도 있음에 틀림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엇이 법정모욕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고찰할 때 중요한 것은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정의 역할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만약 언론보도로 인해 증인이 증언을 기피하게 되거나, 배심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광의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일 때 에는 공공관심사를 논의해서도 안된 다는 명제를 성립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규제를 민사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사율에는 규제를 형사사건에 비해 엄격하지 않게 적용하고 있다. 토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한 규제는 민사소송에서는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서 소송사건을 토론한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가 법정 모욕일 수는 없다[Reg. v. Pasyne(1896) 1 Q.B.577, 580 참고]. 따라서 현 사건에 대해 게재중지명령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무장관의 답변)

법정모욕에 대해서는 오스왈드(Oswald)의 「법정모욕」(Contempt of Court, 3rd ed. 1910. p.6)에 잘 정의되어 있다. 법정모욕을 적용하는 목적에는 통상 세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 함이요, 둘째, 법정이 방해받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함이요, 셋째, 법의 적용이 유지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함이다. 소송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평이나,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미리 판단하는 논평은 결국 법정모욕이 된다. 문제는 재판과정을 침해할 만한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기사가 한 인물을 비방한다든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법정모욕이 구성되는 것이다. 공공관심사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익과 재판진행이 방해되어서는 안되는 공익간에 대해 피고가 제안한 위평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어떤 사안이 공공관심사라는 주장은 법정이 평가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건을 우리는 공공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공공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특정피고는 특정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했든지 또는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야 한든지 하는 문제의 논의는 확실히 공공관심사는 아니다. 논평의 유일한 의도가, 한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재판진행상의 공익 보다 자유로운 토론에 있어서의 공익에 더 우선권을 둘 수는 없다. 피고측이 제안한 형평은 판례를 통해서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줄 수 없는 문제들을 만기는 것이다. 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사는 일반적인 평범한기사가 아니다. 그 기사의 상세한 목적은 편집인의 진술서에서도 솔직하게 인정되어 있다.현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위저리 판사(Lord Widgery)는 「재판진행이 침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지적했다. 특정 당사자에 대한 캠페인의 전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기사취급은 공정심리를 편향되게 할 만한 중대한 위험임에 틀림없다. 재판집행은 판사의 권한이며, 법정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수호해 왔다. 시민 개개인의 분쟁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신문재판은 허용될 수 없다.

(레이드 판사의 견해)

본인은 법무장관은 그가 생각하기에 법정모욕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고통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때문에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아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법무장관마저 소송제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중대한 법정모욕행위는 처벌되지 않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그에게 제출된 모든 명백한 법정모욕을 기소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가 제기하는 사건이 공익문제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판단할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한 법은 공공정책 차원에서 전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보면 소송당사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진행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은 내 판단으로는 그 목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차원에서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필요이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판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도 허용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난에 관심이 있다. 소송당사자는 야비한 비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소송인들은 그들의 문제를 법정에 호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소송인에 대한 압력이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온건한 비판은 합법적이지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논평도 법정모욕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번 법무장관의 상고는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모리스 판사의 견해)

법정모욕이란 법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나 보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정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정의 권위가 위협에 처해서는 안될 것이며 불법적인 침해를 당해서도 안될 것이다. 피고의 입장에 서서 볼 때 법정을 모욕하고 소송당사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분명 없었다 하더라도, 계류중인 사건을 논의하는 것은 그 논의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위저리 판사(Lord Widgery)가 말한 것처럼 그 기사는 많은 점에서 디스밀러즈 사를 비판한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리스트하지 않았다고 과실의 혐의를 두고있는 것이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고등법원 민사부의 결정은 옳은 결론이었다. 그 결정때문에 본인이 설득을 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고를 인정한다.

(디플록 판사의 견해)

선진국가에서는 시민이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불편부당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법정에 의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또는 소송인이 법정에 의해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소송인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형사상의 법정모욕이란 넓게 보면 희생자의 이익이 공익보다는 즉각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에서 절도와 같은 보통의 형사상 범법행위와 유사한 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정모욕은 특정소송인의 편에 서서 다른 소송인이 받아야 할 공정한 심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인이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그들을 공중의 비난 속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선 선데이 타임즈의 기사게재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형 중 후자에 속하는 성질의 행위로 본다. 즉 그

기사에서는 머스틸러즈 제약회사의 과실혐의에 대한 제약회사의 항변사실과 법적시비에 대해 법정의 심리가 종결되기도 전에 미리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등법원 민사부의 게재중지명령은 옳았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재판진행상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공공관리라고 본다. 법무장관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헌법 이론상 왕실을 대변해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법무장관은 정의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실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의 행정적인 권한으로서 기소를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이번 상고를 인정하고자 한다.

(시몬 판사의 견해)

본인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휴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된 신문기사는 법정모욕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 항소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당시 소송상의 절차가 진척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을 위해 협상 중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사의 게재는 특정당사자가 법이 허용한 그의 권리를 포기하게끔 공중의 비난에 빠뜨림으로써 그들 간의 협상을 방해하고, 정당한 재판진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에서 볼 때 해결을 위한 협상도 정당한 재판진행의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만약에 사적인 설득이 허용된다면, 공적인 설득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반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정당한 재판진행을 침해하는 사적인 압력도 좁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앞서 존경하는 판사들이 개진한 법무장관의 역할에 대해 동의한다. 본인은 그들의 견해 이상으로 덧붙일 것은 없다. 본인은 고등법원 민사부의 결정에 동의하며, 상고를 인정하고자 한다.

(크로스 판사의 견해)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을 침해하는 어떠한 기사도 만약 그것이 법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현저한 위험이 없는데도, 왜 그러한 공표행위가 금지되어야만 하느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특정 공표행위를 별도로 분리해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공표가 그 자체 면책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대한 규제는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언론이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경우, 공중은 점차 이를 분개하는데 익숙해져 왔다. 그러므로 언론에 의한 재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절대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은 이번 상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무장관이 제출한 법정모욕법의 적용범위나, 고등법원 민사부의 결정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원의 결정)

상원은 게재중지결정을 내린 고등법원 민사부의 아래와 같은 결정을 인정하면서 소송을 고등법원 민사부로 이송했다.

『피고인 타임즈 신문사는 디스틸러즈 계약회사를 상대로 낸 계류중인 소송에서 제기된 과실의 문제, 계약위반, 기타 증거사실을 앞서 판단하는 어떠한 기사도 공표해서는 안된다.』

통상대로 하면 법무장관은 상원에다 소송비용을 청구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합의에 의거, 소송비용은 당사자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첫째, 제약회사는 그 기사의 공표가 법정모욕에 해당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법무장관의 견해를 구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이를 법정에 조회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선데이 타임즈는 이를 환영했으며, 협조한 바 있다. 둘째, 이번 상고는 일반적으로 법정모욕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공공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상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본적이 없었다. 이 결과, 당사자각자가 그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